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 배제되는 "소정근로 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음.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상태에서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되,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계속근로자기간 전체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될 것이며, 다만 특약으로 실근로하지 아니하기로 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따라서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Q 단시간근로의 의의 및 이들에게도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짧은 근로자 한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용이 빈번한 전기기구의 코드선 중간에 접속부분을 만들면 연결부분의 피복이 벗겨질 경우 감전 사고나 혼촉으로 화재 등 위험이 있습니다.

5.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는 물기가 있을 때에 더욱 잘 통하게 되므로 손이나 발이 젖어 있을 때에는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불량 전기기구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연이 불량한 불량 전기제품을 잘못 사용하면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7.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안전에 더욱 유의합니다.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철사 등을 꽂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콘센트 안전커버 등을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Q 가정에서 전기 사용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A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으로써 잘 사용하면 편리하나 전기기구 등을 잘못 사용하면 감전 및 화재로 인한 재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전기 사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문어발식 사용은 위험합니다. 전등 소켓에서 문어발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기구를 꽂아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니다. 소켓에는 가급적 전기기구를 연결하여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안전기구는 반드시 정격용량의 퓨즈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격퓨즈를 사용하지 않고 동선이나 철선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실링 소켓'에서의 분기는 위험합니다. 전기를 켜고 나서 이리저리 돌리거나 손이 있는 데 역시 위험하오니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4. 배선용 전선은 중간에 접속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의·학·상·식

포천병원 3내과 과장 **양동훈**



특히 위장장애가 많다. 요즘에는 커피나 독한 술 등 위장을 자극하는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늦게 자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대장 질환이 더욱 늘어나는데 이것은 서양 음식을 먹는 경향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경성위장병을 치료는 우선 식사습관을 잘 조절해야 한다. 천천히 먹고 잘 씹어 먹을 것과 식사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을 우선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복부근육을 강화해야 하며, 독한 술을 과음하거나 담배나 커피 등 자극적인 음식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건강염려증인 사람들은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건강에 관한 책들을 가급적 보지 말고 운동을 하여 스스로 극복하도록 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의사, 내과 의사가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면 자신의 생활태도를 점검하여 지나친 점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없었나를 반성하고 이를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불안, 우울을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 \*포천병원(031-539-9114)

신경성 위장병

우리 주위에는 각종 위장감사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이 소화기 안되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입맛이 없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들의 상당수가 신경성위장병이라고 하는데 신경성위장병은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신경성 위장병이란 말은 포괄적인 말이고, 사람마다 그 원인이 달리 위장장애가 나타난다.

신경성위장병은 요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도 많이 온다. 내과 의사가 보는 환자의 반수 이상은 신경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중에 한국인에서는

리안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생겨난 병이란 말만은 아니다. 신경성위장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장에서 겪는 갈등과 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위장 장애가 있고, 불안증이 위주인 건강염려증, 그리고 위장의 기능 자체가 저하되어 오는 기능성 위장장애, 또는 우울증이나 간질 등의 증세로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경성 위장병이란 말은 포괄적인 말이고, 사람마다 그 원인이 달리 위장장애가 나타난다. 신경성위장병은 요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도 많이 온다. 내과 의사가 보는 환자의 반수 이상은 신경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중에 한국인에서는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던, 그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기에 위박한 사정 아래서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 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1663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교부한 영수증상의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표시가 귀하의 진의 아님을 미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공사대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Q 【잔액이 있음에도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고 한 영수증의 효력】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포도연구단지 신축공사의 일부를 600만원에 하도급 받아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공사대금 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할 수 없이 그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었는데, 나머지 공사대금 100만원을 甲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捺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7116 판결).

그러나 위 사안에서와 같이 표의자(表意者)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의(眞意)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제107조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도 채권 총액이 576,600원이었으나, 그 중 36만원을 받으면서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경우, 그 '총 완결'은 36만원을 수령하고 그것으로 모든 결제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로 일을 해석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닌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합과 권위를 사용하기도 하며, 어른이 어린이가 불편을 느끼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 '안돼요'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의 차이를 가르쳐 주세요. 좋은 느낌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부모, 가족 등이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줄 때 느끼는 편안하고 인락한 행복감이고, 싫은 느낌은 자신의 몸을 기분 나쁘게 접촉해 올 때 느끼는 불편함이나 두려운 느낌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일찍부터 몸의 각 기관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이 좋고 이 때 아이에게 내 몸의 주인은 아이 그 자신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너의 소중한 부분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고함을 치고 사립이 많은 곳으로 달려가고 해야 하며 곧바로 부모나 가족, 친구들, 선생님, 경찰서, 상담소 등으로 신고를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Q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A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자녀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 성폭력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성인 또는 자기보다 큰 아이에 의한 성적행위는 나쁜 것이며, 아이가 누군가의 유인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선의의 비밀과 나쁜 비밀의 차이를 가르쳐 주세요. 선의의 비밀은 어느 사람에게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비밀로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기쁘게 해 줄 의도로 사용되는 비밀이며, 나쁜 비밀은 누군가에게 숨겨지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말하는 것이며 아이가 어른이 자기에게 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느끼고 어른이 아이에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때는 즉시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도 어른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어른이 어린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책임 맡아 공사를 하거나 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건설회사의 구두계약 후 공사의 일부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등 반장이 총괄을 하면서도 건설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원인에 의하여 의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과 같이 건설회사가 고용되어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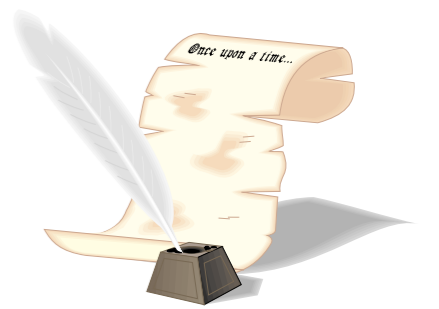
Q 【간접용역 도급사업자에 대한 과세】 저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주로 10명 정도의 목수들과 한 팀을 이루고 방앗(일명 '오막')을 맡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는 목공분야의 모든 일급은 본인 통장으로 일괄지급하고 본인이 목수들의 일급을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A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

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의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과 같이 건설회사가 고용되어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

# 제4기 포천문예대학 수강생 모집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는 늘어나는 문학인구의 저변확대와 포천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4기 포천문예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기 간
  - 2007년4월~6월(3개월간 12주)
  - 매주 목요일 19:00~22:00
- 장 소
  - 대진대학교 국제학관(평생교육원) 310호
- 대 상
  -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인접 시·군 거주자도 환영)
- 과 목
  - 시·수필·소설·기타 문학관련 특강
- 교수진
  - 시 부문(이론과 실제 포함): 대진대학교 박정근·양근원 교수
  - 산문·소설 부문(문예창작 포함): 대진대학교 김성렬·정홍모 교수

- 특 전
  - 본 문예대학 수강료 전액면제
  - 본 기간 이수자에 대하여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 수료증 교부.
- 기 타
  - 문예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점은행제를 추진중이며
  - 문학기행·낭송회·명사초청 강연 등을 계획중이며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포천예총 사무국(031-531-8181), 포천문인협회(사무국장 이원웅 017-364-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천문인협회 회원들은 가족(자녀)·친지·문학도·기타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포천시부장 이재욱